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2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23,749,332	27,712,480
일반회계	812,110,389	24,363,312
특별회계	111,638,943	3,349,168
공기업특별회계	86,209,665	2,586,290
공영개발특별회계	22,275,513	668,26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149,166	1,084,47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784,986	833,550
기타특별회계	25,429,278	762,878
의료급여특별회계	633,263	18,99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0,682	320
에스디해바라기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2,783	83
삼익악기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8,608	858
소수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26	241
음성에코파크연료전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511,174	15,335
사담리태양광발전소제1호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	800	24
사담리태양광발전소제2호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	800	24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5,471,229	164,137
균형발전특별회계	2,166,536	64,996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1,766,470	52,994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529,232	45,87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	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04,719	15,142
수질개선특별회계	12,794,955	383,84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204,55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재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국고보조금(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 중앙기금보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특), 시군조정교부금등(조), 지방채(채)